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685
----------	-------

발의연월일 : 2026. 4. 29.

발 의 자 : 송재봉 · 복기왕 · 이재관  
서영교 · 권철승 · 한준호  
박정현 · 김문수 · 강준현  
이연희 · 김우영 · 이주희  
김기표 · 박 정 · 민병덕  
이수진 · 이광희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자료 석유제품의 거래, 가짜석유제품의 제조·판매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해당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유소 등 일부 석유판매업자는 실질 운영자가 아닌 명의상 대표자를 두고 가짜 석유제품의 제조·판매 등 불법 영업을 반복하면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고 있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함은 물론, 과징금의 감경까지 하고 있어 현행 제도가 효과적·실질적 제재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탈세 등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

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현행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석유제품의 불법 유통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 등”을 “경우 또는 탈세 등 악의적인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불법유통하다 적발된 경우 등”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